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평가대상 조직
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 중 1명(7급 1
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법제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
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행정 및 경제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6. 1. 2.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되
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국가법령정보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제정보담당관”을 “법제정보담당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으로, “법령데이터혁신팀장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국가법령정보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인공지능 법령정보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법령정보의 전산화”를 “법령정보의 디지털화”로 한다.

제8조제7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34”를 “238”로 하고, 일반직 계 “233”을 “23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2”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1”을 “22”로 하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82”를 “84”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4”를 “238”로 하고, 일반직 계 “233”을 “23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2”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2”

를 “23”으로 하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81”을 “8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장	1명 (4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 나 등급 1명)	2027년 9월 30일까지
3.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1명 (4급 1명)	2027년 6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u>법령데이터혁신팀장</u> 및 <u>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u> 을 둔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 ----- ----- ----- <u>국가법령정보센터장</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u>법제정보담당관</u> 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u>법령데이터혁신팀장</u> 및 <u>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u> 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 ----- ----- <u>법제정보담당관</u> 및 <u>국가법령정보센터장</u> ----- ----- ----- <u>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u>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u>법령데이터혁신팀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⑧ <u>국가법령정보센터장</u>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u> 의 구축 및 운영	2. <u>인공지능 법령정보서비스</u> ----- -----

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u>국가</u> <u>법령정보의 전산화</u> 4. ~ 7. (생략) ⑨ (생략) 제8조(법령해석국) ① ~ ⑥ (생략)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u>기획재정부</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u>원자력안전위원회</u>,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생략)	3. ----- <u>법령</u> <u>정보의 디지털화</u> 4. ~ 7.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8조(법령해석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재정경제부</u>----- ----- ----- ----- ----- <u>원자력안전위원회</u>, <u>기획예산처</u>----- ----- ----- ----- ----- ----- ----- ----- ----- ----- -----. ⑧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34</u>	• <u>238</u>	+4
일반직 계	• <u>233</u>	• <u>237</u>	+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1</u>	• <u>2</u>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u>21</u>	• <u>22</u>	+1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u>	• <u>1</u>	<u><삭 제></u>	-1
행정사무관	• <u>82</u>	• <u>84</u>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u>5</u>	• <u>6</u>	+1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34</u>	• <u>238</u>	+4
•	•	•	
•	•	•	
일반직 계	<u>233</u>	<u>237</u>	+4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u>	<u>2</u>	+1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2</u>	<u>23</u>	+1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u>	<u>1</u>	<u><삭 제></u>	-1
행정사무관	<u>81</u>	<u>83</u>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5</u>	<u>6</u>	+1
•	•	•	